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2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김수홍 · 김승원
노응래 · 송옥주 · 양이원영
양정숙 · 윤미향 · 이용빈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·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·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).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8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환경 부장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 질의 수입에 관한 신고수리 또 는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 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